##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462

발의연월일: 2023. 7. 26.

발 의 자:홍석준·지성호·박덕흠

권성동 · 성일종 · 이헌승

윤창현 • 백종헌 • 김용판

강대식 · 안철수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되면서 교원의 학생지도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경우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교현장의 바람직한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확립하고자 함(안 제20조

의2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 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지 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생 략)	학생생활지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lt;신 설&gt;</u>	② 제1항의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원의 학생
	<u>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u>
	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
	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
	<u>지 아니한다.</u>